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15
----------	-------

발의연월일 : 2025. 7. 10.

발 의 자 : 이종배 · 서천호 · 김기웅
엄태영 · 성일중 · 김성원
김위상 · 김민전 · 이만희
김용태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 및 제1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第136條(公務執行妨害) ① 職務를執行하는 公務員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한 者は 5年 以下の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② 公務員에 對하여 그 職務上의 行爲를 强要 또는 阻止하거나 그 職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u> <u>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 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第136條,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の 1까지 加重한다.</u> <u>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公務員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に 處한다.</u>	<u>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u> <u>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u>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